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25. 9. 19.> 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 호

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	
	성명		생년월일 (성별)	( )
	주소		전화 번호	
용도		채용시험 가점	가점비율	%
제출처				

위 사람은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채용시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지 방 보 훈 청 장
보 훈 지 청 장 직인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※ 유의사항

1.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의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2. 취업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http://job.mpva.go.kr)에서 제공하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우편번호 - / 주소 / 전화 ( ) - / 전송 ( ) -

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(전자우편)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